

## 【사건번호 2021-00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건

### 1. 개요

- 피신청인: 기획재정부
- 대상 공공데이터: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OPEN API로 제공
- 신청목적: 채용정보 제공 서비스

### 2. 신청취지

- 신청인은 채용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OPEN API로 추가 생성·가공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직원 채용정보'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상기 홈페이지에서 게시글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3. 사실조사

#### 가. 데이터 보유·관리 및 제공 현황

-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11조,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정보를 통합공시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알리오 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있음

- 이 사건 데이터인 '공공기관 임직원 채용정보'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시대상 정보로서, 각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담당자가 알리오 시스템에 접속하여 채용분야, 근무지, 고용형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 채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며, 알리오 시스템 DB에 저장·관리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홈페이지\* 및 잡알리오 홈페이지\*\*에서 게시글 형태로 대국민 서비스하고 있음

##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를 의미함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 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 다.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이미 공개되고 있으며, 제3자 권리 등의 문제도 주장되지 않았으므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데이터를 API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해당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은 공공기관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함(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
- 비록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제공대상 데이터를 생성, 변형, 가공, 요약, 발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홈페이지 게시글 형태가 아닌 API로 제공해달라는 제공방식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의 취지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넘어서는, 제공 데이터의 형식이나 데이터 제공방법 등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까지 수용할 의무는 부담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피신청인의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원회는 동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가공 등이 용이한 경우나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 공공데이터의 가공 등에 공공기관의 비용 또는 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제공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다만, 공공데이터법이 공공기관에 '이용자가 기계 관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제공의무를 부과한 점(제2조제4호), 공공기관은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제3조제1항)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4. 조정내용

##### 가.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공신청에 따라 OPEN API를 개발하여 이 사건 데이터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다만 이 사건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향후 이 사건 데이터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예산 확보 등 관련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법 제17조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법 제17조제1항각호)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법률상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로서, 홈페이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공개정보이며 제3자 권리 등의 문제도 주장되지 않았으므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다만,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는 지지 않음(법 제26조제3항)
  - 비록 신청인이 데이터를 추가로 생성, 변형 등을 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니나, 현재 피신청인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지 않은 OPEN API를 개발한 후 이 사건 데이터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신청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해당 신청을 즉시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피신청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 노후하고 성능이 불충분하여 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OPEN API 개발 및 HW 장비 증설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는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처분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법이 공공기관에게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법 제3조제1항),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법 제24조제1항),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도록(법 제24조제2항)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 측면에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법 제2조3호)
  - 또한 이 사건 데이터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채용정보로, 다양한 이용자의 활용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향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 사건 데이터를 OPEN API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 5. 조정결과

- 조정성립